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실시 등〉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0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실시	3
2.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기준 신설 등	7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간 연장	12
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 신설	16
5.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과태료 상향	19
※ 참고자료	22
1. 직무발명제도 개요 및 관련 사업 추진 현황	22
2. 기업별 직무발명보상 현황	2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3.
3. 회부연월일 : 2025.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한 바 있음.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 11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실시

개정안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지원시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직무발명보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등¹⁾에게 직무발명보상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3(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① <u>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지원시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직무발명보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u>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보상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u>

1)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의 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현행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사용자의 권리 승계를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하여 ‘제2장 발명의 진흥 제2절 직무발명²⁾의 활성화’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 권리관계(제10조),³⁾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제11조),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15조),⁵⁾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제17조),⁶⁾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제18조)⁷⁾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발명진흥법」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발명진흥법」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제15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나 불이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면서, 사용자등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 이행 여부를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 미이행 또는 불충분한 보상 제공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제공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현황은 기업의 경영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사용자등에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발명진흥법」 제20조의6⁸⁾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8) 「발명진흥법」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고 이에는 ‘직무발명보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⁹⁾가 포함되어 수행 중이므로 직무발명보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9) 기업, 대학, 공공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현황, 보상 단계별 보상 실시 비율, 보상금지급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여 이를 책자로 발간·공개 중임.

2.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기준 신설 등

개정안은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신설).

[표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⑦ (생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이 경우 사용자등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 4. (생략)	제60조(과태료) ¹⁰⁾ ① (생략) ② ----- ----- -----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4의2.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생 략)
--	--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¹¹⁾에서는 ‘종업원등¹²⁾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1항), ‘사용자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제2항)¹³⁾ 등 ‘직무

10) 개정안 제60조 중 제15조와 직접 관계된 조문만 표시한 것임.

11)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12)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발명에 대한 보상'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등이 보상규정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¹⁴⁾는 지적이 있고,

사용자등이 보상규정 작성 및 종업원등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등이 보상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등의 기여도 고려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알리지 않은 사용자등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신설).

우선 보상규정에 대한 기준 작성(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과 관련

13) 그 밖에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하고(제3항), 사용자등은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제4항).

14) 다만, 제6항 단서에서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가 보상규정을 작성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법원 소송에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할 때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16228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등).

하여 개정안에 의할 경우 법령으로 보상규정 작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상규정 작성이 보다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기준의 예시로 제시한 ‘발명의 경제적 가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¹⁵⁾제6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차이가 있는데,

특허청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는 평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존의 보상 기준(‘사용자등이 얻을 이익’)보다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에도 ‘직무발명활성화 사업’¹⁶⁾을 통해 보상금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직무발명 표준규정’(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 공헌도를 고려한 보상금 산정 기준 등 제시)을 마련하여 기업 컨설팅, 제도 안내서 배포 등 보급 확산에 힘쓰고 있으므로¹⁷⁾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 협의를 통해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5)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중 ‘발명장려문화 조성’(1232-303)의 내역사업임.

17)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kipa.org/ip-job)를 통해 ‘직무발명 표준규정’을 보급(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 공헌도를 고려한 보상금 산정 기준 등 제시)

다음 과태료 부과(안 제60조제3항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보상규정 작성 및 통지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허청은 현행 제15조 각 항에서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규정은 강행규정¹⁸⁾이므로 별도의 제재 조치로서 과태료 신설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¹⁹⁾인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8)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등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

19) 특허청이 주관한 ‘직무발명 법·제도 전문가 간담회’(‘24. 4.)에서 제시된 의견임.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간 연장

개정안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사용자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제18조제1항제7호)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생략)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30일</u>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 ----- <u>60일</u> ----- ----- ----- ----- <u>60일</u>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 등 심의를 위해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7조²⁰⁾), 종업원등이 ‘직

20) 「발명진흥법」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등에게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8조21)).

그런데, 종업원등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제18조제1항),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제18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표 4]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해결 방안

구 분	내 용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발명진흥법 제17조)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용자위원 및 종업원위원 각각 3명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 -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 공동위원장 가능 · 법적 구속력 없으며, 불복 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²²⁾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둔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고, 해당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민사소송	· 법원에서 직무발명 보상, 권리 귀속, 계약 위반 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구함

이에 개정안은 종업원등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기한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22)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발명 분쟁 조정신청 건수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신청건수(직무발명)	5	8	2	7	11

자료: 특허청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으로 종업원등이 해당 사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등의 분쟁조정 권리가 보다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²³⁾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만, 특허청은 개정안과 같이 심의 요구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고, 기간의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김동아의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기산점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사유를 안 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기간의 지연으로 사용자등의 법적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기간까지만 적용하는 제척기간²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3) 의안번호 제2209400호, 2025. 3. 27. 발의

24) 특허청은 기산점을 ‘사유를 안 날’로 변경하는 경우 유사입법례(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를 고려하여 3배 수준(예. 180일)의 제척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 신설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 제4호의2 신설).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출석의 요구) ① (생략) <u><신설></u>	제45조(출석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u>② 조정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0조(과태료) <u><신설></u>	제60조(과태료) ²⁵⁾ ①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생략)	<u><삭제></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4의2.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생략)
②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략)	⑤ (생략)

현행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제41조²⁶⁾), 분쟁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르도록 하고(제43조제5항²⁷⁾),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당사자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하여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는 조정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제45조²⁸⁾제2항).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출석을 의무화하면서 불응에 대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허청은 출석의무 부과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

25) 개정안 제60조 중 안 제45조제2항에 직접 관계된 조문만 표시한 것임.

26)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 ⑥ (생략)

27) 「발명진흥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28) 「발명진흥법」

제45조(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성화하려는 조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유사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과도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이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여 신속·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취지와 과태료 부과를 통한 조정 제도 참여 의무화 필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직무발명심의회위원회 미구성 과태료 상향

개정안은 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신설).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과태료) <신설>	제60조(과태료) ²⁹⁾ ①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생략)	<삭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생략)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생략)
②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

29) 개정안 제60조 중 제1항 신설과 직접 관계된 조문만 표시한 것임.

현행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용자등은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면서(제18조³⁰⁾제1항), 이를 위반하여 6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60조제1항).

개정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의무를 해태한 사용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30) 「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 9. (생략)

② (생략)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허청은 정당한 보상에 관한 조항이 강행규정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 1

직무발명제도 개요 및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직무발명제도(발명진흥법§10~19)

- (개요)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혁신발명을 촉진토록 하는 제도

*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발명자주의·사용자주의 특징 및 직무발명제도 효과 >

발명자주의	VS	사용자주의	⇒	직무발명제도
우수발명 창출 발명의욕 고취 정당한 보상문화		기술발전 촉진 기업이익 확대 안정적인 권리승계		혁신발명 촉진 인센티브 + 경영이익 산업발전

- (관련 법령) 발명진흥법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 사용자의 권리승계 및 정당한 보상 등 직무발명 관련 절차·의무 등*을 규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 규정 포함

□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 (개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컨설팅, 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이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기업 설명회	175	157	175	175	160	170
맞춤형 컨설팅	150	150	278	278	254	384
인증제도 운영	40	40	40	40	40	100
계	365	347	493	493	454	654

- (효과) 규정 보유시, 기업은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종업원은 혁신발명을 지속 창출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구분	주요 효과
보유시 (긍정적)	①기업의 안정적인 권리승계 가능, ②직무발명 불승계 경우라도 기업에 법정 통상실시권 부여, ③정당한 보상으로 종업원의 혁신발명 창출 촉진 ⇒ 기업 경쟁력 제고, 발명자 정당한 보상 가능
미보유시 (부정적)	①핵심기술의 외부유출(종업원→타 기업), ②우수 직무발명의 강탈(기업이 보상 않음) 및 이에 따른 소송 발생 등 우려 ⇒ 기업 경쟁력 하락

참고 2

기업별 직무발명보상 현황

□ 기업별 직무발명보상 현황(출처: '24년 지식재산활동조사)

구분(기업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발명신고/ 출원/등록 보상금	평균 보상액(만원)	4,350	799	275	541
	평균 지급인원(명)	78.8	18.2	5.1	10.3
	평균 지급 권리(건수)	56.4	19.1	5.4	9.5
출원유보 보상금	평균 보상액(만원)	724	816	119	350
	평균 지급인원(명)	1.9	5.6	5.3	5.2
	평균 지급 권리(건수)	2.6	9.0	3.3	4.9
실시/처분 보상금	평균 보상액(만원)	2,128	862	597	786
	평균 지급인원(명)	27.8	2.6	5.9	6.8
	평균 지급 권리(건수)	23.3	3.3	2.5	4.4

※ 최근 2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2건 이상 출원한 기업 중 보상금 지급 응답 기업 기준